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
----------	----

제출년월일 : 2022. 10. 19.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조례의 적용대상인 “신중년층”을 “중장년”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전환 가속화와 제조업 등 주력사업의 경기 둔화, 고물가 경제 상황 속 조기퇴직 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년의 양질의 일자리로의 안착과 지역경제 활력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창원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신중년층”으로 정한 것을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중장년”으로 규정하여
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

다. 지원시설과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변경함(안 제6조 및 제8조)

-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 창원시 중장년 지원시설

- 창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 창원시 중장년 지원 운영위원회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 법령: 붙임 2

- 「지방자치법」 제13조

다. 예산조치: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

라.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2. 9. 23.~10. 13.) 결과: 제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3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으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중장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중장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선정기준,”을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으로, “지원할”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액 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중 “지원사업”을 “제5조제1항의 지원사업”으로, “인생이모작”을 “중장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시설의 위탁)”을 “(시설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을 “중장년을 위한”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생이모작”을 “중장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신중년층”을 각각 “중장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신중년층 업무 담당”을 “중장년업무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신중년층 업무”를 “중장년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중년층”을 “중장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하는 중장년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본다.

제4조(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중장년 지원시설로 본다.

현행	개정안
<p><u>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창원시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신중년층</u>”이란 <u>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u> 2. “<u>인생이모작</u>”이란 <u>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u> <p>제3조(시장의 책무) <u>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창원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중장년</u>”이란 <u>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 ----- <u>중장년</u> ----- ----- ----- -----.</p>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선정기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
- 중장년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
-----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액 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
-- 제5조제1항의 지원사업-----
----- 중장년 -----

-----.

제7조(시설의 위탁) ① -----

----- 중
장년을 위한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신중년층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중년층 업무 담당 국장
2. (생략)
3. 신중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

----- 중장년 지원 -----

-----.

1. 중장년 -----

2. 중장년 -----

3.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장년업무 소관 -----

-----.

③ -----

-----.

1. 중장년업무 -----

2. (현행과 같음)

3. 중장년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7. (생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창원시 중장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 창원시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사업비

나. 관련 조문

- 안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 비용추계 미첨부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안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및 제7조(지원시설의 위탁)
 - 연간 소요 예산액 : “추계 결과” 참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창원시 거주 만 40세~64세 중장년의 성공적인 재도약 지원(일, 배움, 복지)을 위한 복합지원 공간 조성 및 연간 민간위탁 운영비
- 비용추계 기간 : 2023년 ~ 2027년(5년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소요예산	6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800,000
(가칭)중장년 지원센터 설치비	300,000	-	-	-	-	300,000
(가칭)중장년 지원센터 연간 위탁운영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창원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

3. 작성자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장 장 승 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6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800,000
(가칭)중장년 지원센터 설치비		300,000	-	-	-	-	300,000
(가칭)중장년 지원센터 연간 위탁운영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재원 조달		6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8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6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800,000
	지방세	6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8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